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19
----------	-------

발의연월일 : 2022. 4. 27.

발 의 자 : 김의겸 의원

찬 성 자 : 강득구 · 강민정 · 강병원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홍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홍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김한정 · 김희재 · 남인순
노웅래 · 도종환 · 문정복
맹성규 · 문진석 · 민병덕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박상혁 · 박성준 · 박영순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박 정 · 박주민 · 박찬대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서영석 · 설 훈 · 소병철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양이원영 · 어기구 · 오기형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유동수 · 유정주 · 윤건영
윤관석 · 윤영덕 · 윤영찬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윤후덕 · 이개호 · 이광재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이상현 · 이성만 · 이소영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용빈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전혜숙 · 정성호 · 정일영

정청래 · 정춘숙 · 정태호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조응천 · 조정식 · 주철현
진선미 · 진성준 · 천준호
최강욱 · 최기상 · 최인호
최종윤 · 최혜영 · 한병도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황운하 · 황희의원
(17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포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

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나.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

다.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10에”를 “제44조의11에”로 한다.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1로하고, 제4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0(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에 따른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2.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뉴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3.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4. 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말한다)를 바탕으로 해당 위치 주변에 사업장을 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뉴스가 일정 비율 이상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6조제5호 중 “제44조의10에”를 “제44조의11에”로 한다.

제76조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한 자

4의3. 제4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 ----- ----- ----- ----- ---제44조의11에-----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44조의10(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에 따른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

술적 조치

2. 이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뉴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3.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4. 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동의를 받은 정보를 말한다)를 바탕으로 해당 위치 주변에 사업장을 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뉴스가 일정 비율 이상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생략)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44조의11(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현행 제44조의10과 같음)

제66조(비밀유지 등)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11에 -----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한 자

4의3. 제4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 25. (생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